

# 제2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

2023. 12. 2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12월 27일 14:00 ~ 14:58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의결 제383~414호, 보고 제38~40호)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의결 제381~385호, 제387~414호, 보고 제38~40호)

유 재 훈 위 원

(의결 제381~386호, 제388~414호, 보고 제38~40호)

유 상 대 위 원

김 용 진 위 원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3년도 제22차 및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3년도 제23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3년도 제22차 및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23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81호 『중소기업은행 2024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382호 『중소기업은행 2024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 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의 2024년도 업무계획(안) 및 인건비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83호 『한국산업은행 2024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 제384호 『한국산업은행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2024년도 업무계획 (총 77조 원, 전년대비 +4.8%) 및 2024 회계연도 예산안(총 1.19조 원, 전년대비 +2.4%)을 승인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5호 『신용보증기금 2024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2024년도 업무계획 (보증총량 86.3조 원, 중점정책부문 보증공급 57.0조 원)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6호 『금융감독원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권대영 상임위원임. 금융감독원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지난 11월부터 7차례 걸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으며 기본원칙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예산지침의 틀을 준수하되 금융감독원의 특수성에 따라 필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탄력성을 부여하였음. 주요예산 심의결과임. 먼저 2024년도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경상경비의 경우 업무상 불가피한 예산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동결하였음. 인건비의 경우 지난해 금감원 평균임금이 고임금 공공기관 수준에 미달함에 따라 공공기관 예산지침 기본 임금인상률인 2.5%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금감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법 제정, 불공정거래 조사 증가, 새마을금고 검사 강화 등 신규감독 수요를 고려하여 필수 정원 수요를 42명 증원하였음. 이중 10명은 당초 2023년까지 한시적인 증원이었으나 2024년도부터는 정규 정원에 반영하되 부대조건으로 3년 후에 정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또한 향후 금융감독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에도 정·현원차 해소 노력 외에 기능별 인력의 조정, 시니어 직원의 활용,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핵심인력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소위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부과하였음. 이러한 심의결과에 따라 금감원 예산은 2023년도 3,969억 원 대비 4.78%가 증액되었고 법정경비인 회계기준원 지원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4.6%가 증액되었음. 당초 금감원이 요구한 예산 대비 216억 원이 감액된 것임. 아무쪼록 금융감독원 예산승인(안)을 소위에서 심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7호 『예금보험공사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예금보험공사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총 1,434억 원 신청 대비 △20.3억 원 감액)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8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4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389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4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정책모기지(공급규모 10조 원, 전년대비 △34조 원 축소) 공급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과 예산(총 1,993억 원, 신청대비 △169억 원 감액)을 승인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0호 『서민금융진흥원 2024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391호 『서민금융진흥원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4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393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 고시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난 10월 舊 기촉법이 실효된 이후, 재입법안이 12월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공동관리절차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4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분야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5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인 '24년도 건강보험료 금액을 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6호 『국민연금공단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민연금공단의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7호 『에이비엘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98호 『DB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99호 『DGB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0호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1호 『동양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2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3호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4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5호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에이비엘생명보험(주) 등 9개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당산출 관련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6호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또는 중복적인 보고의무를 사후보고 하거나 중복보고를 면제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7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유동화증권 시장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8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일부개정규정의 승인을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9호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거래소의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과 임직원의 금융 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09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과 관련하여 박O환 등 5인의 경우,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태료 20%를 감경하고, 김O수 등 15인의 경우, 임직원 매매제한에 대하여 자진신고 감경 비율을 차등 적용한 금융위 의결('23.11.15일)을 고려하여 최대 30% 이내에서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감경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겠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착오매매 손해 배상 절차를 분쟁처리절차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는 면제하고, 기관주의로 같음하여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0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찰실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10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임직원 매매제한에 대하여 자진신고 감경비율을 차등 적용한 금융위의결('23.11.15일)을 고려하되, 금감원 임직원의 경우 검사및 제제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조치 감경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등의 특수한 상황을 참작하여 김O호 등 4인에 대해 자진신고 감경한도를 50%를 최대로, 기간별로 감경비율 차등 적용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1호 『금융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2호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12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한국 자산신탁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 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약관에 대한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판단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는 '상'으로 변경하고, 위반결과는 다른 투자자 피해 발생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제재심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보통'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을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3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기관 과태료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13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플랫폼 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위험관리기준 미마련과 관련하여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세부 항목 중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과 관련한 부분은 미마련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를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4호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직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8호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4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9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40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제2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8분 폐회)